파주시 공고 제2026-2936호

파주시 공공용통행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공공용통행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3일

파 주 시 장

□ 제정이유

○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용통행로 중 법적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사유지에 위치한 현황도로 등은 노면 파손, 포트홀, 배수불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음.

○ 이에 공공용통행로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공공용통행로 유지관리사업의 시행 사유 및 예산 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
○ 사업 시행 시 주민 안전 우선, 최소 범위 시행, 토지이용 상태의 실질적 변경 금지 등 시행원칙을 정함(안 제4조)

○ 사업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○ 사업 시행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를 정함(안 제6조)

○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○ 주민 안전 확보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간 조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○ 대상 선정, 공사범위, 시행절차, 안전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□ **자치법규안**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□ **의견제출**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2월 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・주소・생년월일・연락처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도로관리과 도로관리3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80, 2층 (와동동) (우10896)

○ 전화 : 031)940-4841 / Fax 031)940-539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공공용통행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